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66호

2023. 2. 17.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263호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4
- 삼척시 공고 제2023-264호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
- 삼척시 공고 제2023-269호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3-2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544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507-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544	20230215	신규 부여	20090626	방재단지 예정지 명칭 활용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176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3326-13	20230215	신규 부여	20090807	자연지형명칭 반영(산맥)
3	강원도 삼척시 우지동 65	강원도 삼척시 우지길 65 (우지동)	20230215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기 존도로명)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8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2길 36-16	20230215	신규 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 역명사용(궁촌길분 기)
5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 156-2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4183	20230215	신규 부여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23 - 263호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삼척시장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3. 2.

제 출 자 : 삼척시장

1. 의결주문

-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칭(기관명칭)을
개정하여 운영.

- 개정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를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 개정하여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과 어법에 따라 자구 등 수정

3.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칭(기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명칭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 위원명칭 일괄 변경
- 나.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 내용 추가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 통합방위작전 · 훈련의 지원대책
 -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 2) 예비군 ·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 계몽 및 지원 대책
 - 3) 취약지역 대비책
 -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영 및 지원대책
 - 1)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2) 통합방위작전 ·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 · 관 · 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통제구역 설정
 - 통합방위 예규 관리
 -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다.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

-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6일까지 작성하여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5914 삼척시 대학로 81, 삼척시청 총무과
- 2) 전화 : 033-570-3431
- 3) 팩스 : 033-570-3133

5.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 제5조”를 “「통합방위법」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두되”를 “두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간사 :”를 각각 “간사:”로 한다.

- 5. 동해해양경찰서장
- 6. 제2191부대 경비4대대장
- 7. 123 방첩부대장
- 10. 강원영동병무지청장
- 11. 강원동부보훈지청장
- 12. 제1기지 방호전대장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으로 한다.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지역주민 등의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3조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호,제5호, 제6호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통합방위 예규 관리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4조제4항 중 “의장 이”를 “의장이”로, “출석 과”를 “출석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두되”를 “두며”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발령 또는 통합방위사태선포,”를 “발령, 통합방위사태선포 또는”으로, “필요시 (협의회)”를 “필요시(협의회)”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사항은 규칙”으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 2023- 264호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삼척시장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시립합창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정비 등 전면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위촉 및 임기, 정기평가,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라. 의무,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마. 외부출연 및 수입금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2. 14. ~ 3. 8.(22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문화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문화홍보실(문화예술부서)
 - 전화 : 033-570-3226
 - FAX : 033-570-3132

5. 그 밖의 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삼척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삼척시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삼척시(이하“시”라고 한다) 부시장으로 한다.
- ②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
- ③ 일반단원에는 단무장과 파트별 수석, 부수석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3조(자격) ① 단원의 연령은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로 하고, 일반단원은 위촉기간 중에는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
- ②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반주자는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단무장은 일반단원 중에서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단원은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발생으로 인하여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정기평가) 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위촉 만료 2개월 전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하는 경우
2. 단장이 정한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주 이상 불참한 경우
3. 일반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무) ①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부출연 및 수입금) ① 합창단은 합창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한 경우에는 외부출연에 참가한 단원

에게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269호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삼척시장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나.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6조)
- 다. 유지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8조)
- 라. 삼척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33)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 전 화 : (033) 570-3387 ○ FAX : (033) 570-3142
- 전자우편 : misokim79@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 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소득법인”이란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해당 지역의 10가구 이상 주민 참여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농촌지역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 ① 시설물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장·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영농조합법인
2. 소득법인

3.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에 단체로 등록된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위탁 기간) 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할 경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8조(위탁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

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1

2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에 발생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비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12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

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 퍼센트 환불

제13조(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연도말 사업 정산 결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14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5조(손해보험 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 등의 재산 및 신체의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에 참적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때 협의회 구성은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3조제1항을 따른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1. 소관부서 지정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